					성호	화비		-2	1 3	<u></u>	명	人	,	***************************************						
성	성 명 김수		연	주민 (납/	등록번호 세번호)	7	6	1	0	0	1		2	1	7	8	3	1	9	
주 :	소	, ,	서울시.	양천구 독	동남동	로2길 60 - (30	세잉	청[가루	@10	6동	101	호						
대 상	성 명 얻		엄	초아 주민등록:		등록번호	1	3	0	7	0	1		4	0	0	6	5	1	4
어린이	원	명		칟	남누리	어린이집	ļ				소득자의 관계 자니						ひに	녀		
						성화비	Ĺ	납입	_	역				1						
납부	연월	일	월분	금액(원)	비고	Į.	납부	연율	일	udo.	월분		-	글액	(원)		비고	<u>)</u>
2016	2016. 4. 4월		12,0	00			2016. 10.			1	0월			12,	2,000					
201	2016 5. 5월		5월	12,0	00			2016. 11. 11월				12,000								
2016	2016. 6. 6월		12,0	00		2	2016	3. 1	2.	1	2월			12,	000					
2016	6. 7		7월	12,0	00					e)		***								
2016	6.8		8월	12,0	00					475		,	1							
2016	6. 9		9월	12,0	00							1	99	4		W. W				
	총	등액		108,0)00원								15.1							
사용목적 연말정신					산 소득	등공제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성화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 월 17일

신청인 김수연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1월 17일

참누리 어린이집



					별활	동비	Į	급	입	5		병/	H							
성	성 명 김수		-연		등록번호 네번호)	7	6	1	0	0	1		2	1	7	8	3	1	9	
주 :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독	윾동남5	로2길 60 -	30	세잉	청[가루	@10	6동1	101	호			1			
대 상	성명 얻		초아 주민등록번호		1	3	0	7	0	1		4	0	0	6	5	1	4		
어린이	원	ë	d d	칟	남누리	어린이집					소득자의 관계 자녀						1			
	1			V	= 5	별활동년	<u> </u>	납입	일 [H 으	1									
납부	납부연월일 월분		금액(원)	비고 납부연월일			일	월분 금액			(원)	비고						
2016	2016. 4. 4월		34,2	34,222			2016. 10.			1	0월			28,	000					
201	2016 5. 5월		5월	34,2	22			2016. 11.			1	1월			23,	692				
2016	2016. 6. 6월		30.8	00		2016. 12. 12월 2			23,	692										
2016	6. 7		7월	28.0	00							-1	ing factor	j		Codest Instance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 Ciditate de la
2016	3.8		8월	26,8	33										SEPTEMBER 2015 SE-14					
2016	6. 9		9월	25,6	66									-2-						
	총	등액		255,1	127원															
사용목적				연말정선	산 소득	등공제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 월 17일

신청인 김수연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1월 17일

참누리 어린이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일련번호 16-031

기부금 영수종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자	•	·
성명(법인명)	김 수 연	주민등록번호 761001-2178319
		(사업자등목번호)
주소(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	e2길 60-30 세양청마투@ 106동 101호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한국불교태고종 천중사	사업자등록번호 209-82-62706
		(고유번호)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롱로	기부급공제대상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214(정통동)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③ 기부금 모집처(연	선론기관 등)	
단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0 0			~ 0.01		금 액			
유 형	크 드	구 분	연월일	품명	수량	단가		
종교단체	41	금전	16.01.01~ 16.12.31				1,000,000	
							이하여백	
				-//				
	,,,,,,,,,,,,,,,,,,,,,,,,,,,,,,,,,,,,,,					한계	1,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1일

신청인

김 수 연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12월

기부금 수령인

한국불교태고종 천중사 주지 (서명

- 1.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 을 찍어 기부금영수중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 1항)
- 2.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등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많 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우급 근문	유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군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독세법」 제34조제1항(중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복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뿌금	우리사주	42
요경비(손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의	50

3. ❶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209-82-62706

단 제 명 : 한국불교태고종천증사

대표자 성 명 : 이규범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420320-100081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흥동 426-3

대표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복구 정통동 426-3 11/4

교부 사유: 신규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안해 면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무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재시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004 년 03 월 18 일

성북세무서장

